

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27일
신고인	인증기관명(기관지정번호)	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	소재지	전화번호	
변경내용 (※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)	구 분	당 초	변 경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지정서 원본 2.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						
처리절차								
신고서 작성	→	접수, 검토	→	심 사	→	변경여부 판정	→	지정서 재발급
신고인	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		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